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대상 확대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하여 인사교류 및 파견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 환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전문경력관 파견 요건 확대 (안 제15조)

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으로 직무상 파견이 가능하도록 요건 확대

나.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교류 제도 신설 (안 제15조의2)

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용권자는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의 2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지방자치 단체 및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할 수 있다. 다만, 제27조의2제1항제1호 · 제2호 · 제3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인사교류) ①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이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임용령 제27조의5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파견) <u>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.</u> <신 설>	제15조(파견) <u>임용권자는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할 수 있다. 다만, 제27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 제15조의2(인사교류) ① <u>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이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임용령 제27조의5를 준용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4